

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예고

「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 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9일

옥천군 의회의장

1. 조례명 :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(대표 발의자 : 곽봉호 의원)

2. 발의의원 : 곽봉호 의원, 손석철 의원

3. 제정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대상(안 제3조)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(안 제4조)

- 수수료 청구 및 납부(안 제5조)
- 이의신청(안 제6조)
-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~제9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10조)
- 안전 상정(안 제11조)
- 결과 통지(안 제12조)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**2021년 2월 18일**까지 옥천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4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- 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붙임 1.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부
2. 의견서 1부

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
임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호”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, 유출, 오용, 남용 등을 방지하기
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.
2. “총괄부서”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
부서를 말한다.
3. 그 밖에 용어의 뜻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옥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속 행정기관
2.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
라 한다)

제4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) ① 「개인정보 보
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
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
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영상정보 포함) :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

국장

2.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: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
3.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: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
부서의 장

② 출자·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영상정보 보호책임자, 개
인정보 관리책임자,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
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보고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
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
지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청구 및 납부) ① 군수,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
에게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 등의 요구
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한다)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
「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별표2에 따라 청구할 수 있
다. 다만,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, 출자·출연기관에 있는
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「전
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
수 있다.

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
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.

제6조(이의신청)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,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,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심의·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2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

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,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, 총괄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 :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

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·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1조(안건 상정) ① 제7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,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,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

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결과 통지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이의 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(팩스전송번호)
		전자우편주소

열람등 요구내용	
-------------	--

통지서 수령유무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.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.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4항, 제36조제1항,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)
-------------	--

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	
------------------	--

「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이의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옥 천 군 수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²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

수신자 ○○○ (우 , 주소)

이의신청 내용		
접수일자 및 접수번호		당초 결정기간 14일
연장사유		
연장 결정기간		
그 밖의 안내사항		

「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
년 월 일

옥 천 군 수

[별지 제3호서식]

이의신청 (()인용 ()부분인용 ()기각 ()각하) 결정 통지서

수신자 ○○○ (우 , 주소)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이의신청 내 용	
-------------	--

결정 내용	
-------	--

열람 일시	열람 장소
-------	-------

열람 방법 []열람·시청 []사본·출력물 []전자파일 []복제·인화물 []기타

교부 방법 []직접방문 []우편 []팩스전송 []전자우편 []기타

정정·삭제
 처리정지
조치내용

납부 금액	①수수료 원	②우송료 원	계(①+②) 원
	수수료 산정 명세		

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「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옥 천 군 수

[별지 제4호서식]

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

수 신 :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

참 조 : 심의위원회 주관부서장

다음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심의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장(처리부서장)

1. 청구인	성명	
	생년월일	
	주소(소재지)	
2. 청구요지		
3. 심의요청 사유		
4. 담당부서 검토의견		
5. 그 밖의 사항		
첨부:	1) 심의안건	○부
	2) 청구서(이의신청서)사본	○부
	3) 그 밖의 증빙자료	○부

회 의 록

일 시			장 소	
참석현황	정 원	참 석	불 참	불참위원
회의내용				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생년월일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고